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1 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용혜인·김상욱·이수진

박홍배 • 한창민 • 이성윤

진선미 • 전종덕 • 정혜경

윤종오 • 정춘생 • 김남근

송재봉 • 박지혜 • 김종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,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,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 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,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 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 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 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

단축을 사용할 때,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 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간"을 "기간 또는 시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의2.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
- 2의3.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한 태아검 진 시간
- 2의4. 여성 근로자가 제75조에 따라 사용한 수유 시간
- 4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	6
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<u>기간</u> 은 출근한 것	<u>기간 또는 시간</u>
으로 본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2의2.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
	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
	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
	<u>시간</u>
<u> <신 설></u>	2의3.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
	7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한
	<u>태아검진 시간</u>
<u><신 설></u>	2의4. 여성 근로자가 제75조에
	따라 사용한 수유 시간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	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
	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
	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
	축된 근로시간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